

| 기준   | 개정 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(안)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내화기준 |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70조제1항 적용대상을 구체화 |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상혼선 해소 |

### 3. 의견제출

「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(안) 전문은 '화학물질안전원'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라. 보내실 곳 :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

○ 주소 : (28164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

○ 메일 : safety11@korea.kr

○ 전화 : 043-830-4322

○ FAX : 043-830-4299

※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<http://nics.me.go.kr>)

### ●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-85호

「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'15.1.1.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'14.12.31.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| 기준          | 개정 취지   | 개정(안)  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| '15.1.1.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| '14.12.31.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·내압,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존시설 판단기준   | 시설의 교체·변경,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 | 1)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,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·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<br>2)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|

## 3. 의견제출

「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(안) 전문은 ‘화학물질안전원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라. 보내실 곳 :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

○ 주소 : (28164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

○ 메일 : safety11@korea.kr

○ 전화 : 043-830-4322

○ FAX : 043-830-4299

※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<http://nics.me.go.kr>)

### ●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-86호

「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8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안) 행정예고

## 1. 개정이유

‘15.1.1.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‘14.12.31.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, 용어를 정비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

| 기준          | 개정 취지   | 개정(안)  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| ‘15.1.1.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| ‘14.12.31.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·내압,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존시설 판단기준   | 시설의 교체·변경,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방안 마련  | 1)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,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격·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<br>2)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|

## 나. 용어정비

| 기준   | 개정 취지  | 개정(안)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입호스 | 주입호스 기준을 안전원고시 제2017-10호에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 | ‘주입호스’를 용어정의 부분으로 이동 |